

●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6-20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05일

울산전파관리소장

전파법령위반 무선국(정기검사불응) 행정처분 통지내역

1. 근거법령: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
2. 법령위반사항: 정기검사불응
3. 처분내역: 무선국 허가취소
4. 처분일자: 2026. 7. 21.
5. 송달대상 및 내역

번호	허가번호	호출명칭	시설자명	시설자주소	비 고
1	41-2000-20-0000116	301쌍용호	(합)범*공사사장	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57-1	

6. 참고사항

- 가. 운용정지 대상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니 신규개설허가 (울산전파관리소) 및 준공검사를 (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) 받으시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영하시기를 바라며,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되면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(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, ☎052-231-8935, Fax 052-231-89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